

의안번호	2213073
의 퇴 인	정진욱 의원
회 답 일	2025. 11. 5.
추계번호	25A519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회수·폐기·반송 명령)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회수·폐기·반송</u> 을 명할 수 있음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u>회수·폐기·반송</u>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u>그 비용은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u>	재량규정
2	안 제34조의2 (손실보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u>보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u>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의2 (회수·폐기·반송 명령)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의2 (손실보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¹⁾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반송하는 경우 ① 회수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소유자, 수입·판매자가 회수·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무원이 회수·폐기·반송하고 추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추후에 발생원인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 [참고자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소관
- (안 제23조의2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수입·판매자가 승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생산이 금지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생물체를 폐기·반송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명령의 방식이 추가된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관련이 없음
- (안 제23조의2제2항) 소유자, 수입·판매자가 회수·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이를 대신 이행하고 소유자, 수입·판매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제23조의2(폐기·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현행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비용의 회수까지 소요 기간이 발생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표 1]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반송 현황(2023~2025.10월)

(단위: 건)

관계 중앙행정기관	폐기·반송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1~10월	
	폐기	반송	폐기	반송	폐기	반송
농림축산식품부	25	1	29	1	25	0
해양수산부	4	0	4	0	4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각 부처

- (안 제34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손실에 대하여 대신 보상한 뒤 추후에 발생원인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손실보상 업무가 추가되고, 손해배상청구 후 비용 회수까지 소요 기간이 발생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과 손실보상 등에 따른 비용이 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확대될 사업 규모와 예상 손실보상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소관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반송 현황(2023~2025.10월)

[참고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및 표시·취급관리 등 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개발·실험의 승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산업통상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가.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표시·취급관리 등 나.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개발·실험의 승인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나. 자연생태계 위해성 협의심사
해양수산부	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나. 해양생태계 위해성 협의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 수입·생산·이용승인, 표시·취급관리 등
공통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기준의 일반원칙, 위해성심사 결과의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나.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표시 및 취급관리 등 다. 해당부처 소속 국공립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라.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10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5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249호]